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5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대상에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예시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인요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19.

다.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용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대상에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예시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으로서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예시하고 있음(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림사업</u> 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자금지원) ① ----- ----- ----- <u>산림사업의 실행,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u> <u>산림사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이는 현행법 시행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예시에 ‘수목원의 조성·관리’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예시하여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 제2조(정의)1)에 따르면,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원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의 조성·관리가 이미 열거되어 있고, 이 법 시행령 제68조제2호에서 산림사업의 실행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목원의 조성·관리에 대하여도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사업비의 용자 또는 보조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또한, 법제 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은 “산림사업의 실행,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의 실행’과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사업’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법문의 간결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